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 청 인	협 회 (기 관) 명		대 표 자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협 회 (기 관) 의 전 화 번 호	
	협 회 (기 관) 의 주 소			
보 유 기 술 인 력	기 계 분 야	명	전 기 분 야	명
	산 업 안 전 분 야	명	기 타 분 야	명
보 유 장 비 내 역	검 사 기 기		시 험 기 기	
	컴 퓨 터 프 로 그 램		기 타 장 비	
기 타 요 건	자 체 사 무 실	m ²		
	관 리 직 원	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에 따라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인력을 보유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2호에 따른 장비의 명세서(장비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3. 사무실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관리직원 채용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3호다목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3호라목에 따른 안전성검사 세부규정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